

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행			개정안				개정사유
제4조 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	계열구분	2027학년도 학과(전공)	입학정원	계열구분	2027학년도 학과(전공)	입학정원		대학의 입학정원 중 모집유보인원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.
			주간			정원(주간)	모집유보	
	공학	전기공학과	35	공학	전기공학과	35	47	
		소방안전관리과	35		소방안전관리과	35	5	
		스마트기계과	40		스마트기계과	40	-	
		건축인테리어과	35		건축인테리어과	35	25	
		컴퓨터정보학과	35		컴퓨터정보학과	35	-	
	인문 사회	경영학과	60	인문 사회	경영학과	60	20	
		사회복지학과	40		사회복지학과	40	20	
		경호경찰행정학과	60		경호경찰행정학과	60	60	
		아동보육과	30		아동보육과	30	5	
		부동산학과	40		부동산학과	40	-	
	자연 과학	호텔조리과	60	자연 과학	호텔조리과	60	10	
		호텔제과제빵과	70		호텔제과제빵과	70	-	
		반려동물과	70		반려동물과	70	-	
		반려동물보건과	30		반려동물보건과	30	-	
		바이오식품학과	30		바이오식품학과	30	30	
	예체능	영상콘텐츠과	40	예체능	영상콘텐츠과	40	40	
		웹툰출판미디어과	40		웹툰출판미디어과	40	-	
		스포츠지도학과	70		스포츠지도학과	70	-	
뷰티디자인과		90	뷰티디자인과		90	-		
실용음악과		40	실용음악과		40	-		
뉴케이팝학과		30	뉴케이팝학과		30	-		
경호무도학과		35	경호무도학과		35	-		
스포츠건강재활학과		35	스포츠건강재활학과		35	-		
합계		1,050	합계		1,050	262		
계열	학과	입학정원 주간	* 모집유보 정원은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를 따름					
공학	한국어학과 (외국인 전담학과)	30명						
계열	학과	입학정원 주간						
공학	한국어학과 (외국인 전담학과)	30명						
제19조(전과)	① 교내전과(이하“전과”라 한다)는 1학기 이상 이수자에게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,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.			① 교내전과(이하“전과”라 한다)는 1학기 이상 이수자에게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다만,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,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. 또한, 졸업학기에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.(단, 상위학제 신청은 예외)				전과허용 및 제한범위 개정
	② 전과인원은 전출·전입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%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점입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			② 전과인원은 전출·전입학과 기준으로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50%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점입학과의				

대학의 입학정원 중 모집유보 인원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.

* 모집유보 정원은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를 따름

	에 한하여 허가하며, 반려동물보건과 의 경우 입학정원의 범위 내 전과를 허용한다. 다만, 모집단위 폐지로 인 해 특별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 로 할수 있다. ③~⑧ <생략>	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하며, 반려동물보건과의 경우 입학정 원의 범위 내 전과를 허용한다. 다만, 모 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수 있다. ③~⑧ <현행과 동일>	
제25조의1(교 육과정 공동운영)	신설	① 국내·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.	변화된 교육과정에 맞춰 국내·외 대학과의 공동운영 내용 추가
제25조의2(융 합교육과정운 영)	신설	① 대학 내 둘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연계·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② 융합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변화된 교육과정에 맞춰 융합교육과정 운영 내용 추가
부칙	신설	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6년 00월 0 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일) 제19조(전과)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2학기 신청부터 적용한다.	적용일 명시